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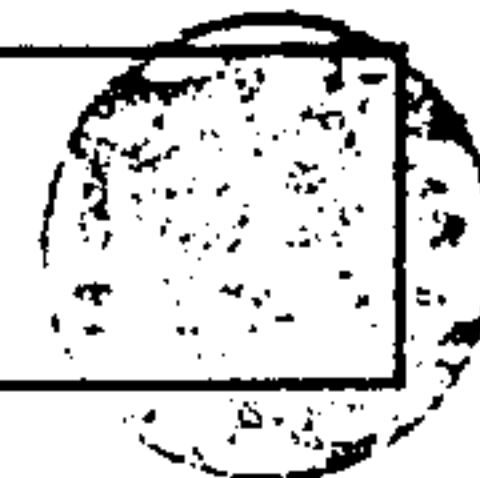
의 안 번 호	제 260 호
의 결 년 월 일	2001년 2 월 20 일 제 125 회

의 결 사 항
월안가결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년월일	2001. 2 . 13 .

기획감사실장심사필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
----------	-----

제출연월일 : 2001. 2. 28.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환 경 과)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종전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가축의 범위를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으로 명확히 규정함 (개정안 제2조)
- 종전의 정화시설(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안 제4조)
- 종전에 없던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에 통합함 (개정안 제5조)
- 분뇨처리장 사용자 및 처리비 징수방법을 현실적으로 정함 (개정안 제9조)
- 종전의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및 기준을 본 조례안에 통합시행함 (개정안 제13조)

3.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4. 근거법령 : 불임

불임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부.

보은군조례 제 호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는 자를 말한다.
2. “처리장”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말한다.
3.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사슴)을 말한다.
4.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 기르는 것(계속적인 보관을 포함)을 말한다.
5.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오니”라 함은 정화시설의 침전물중 세균에 의한 번식·소화하여 아래로 가라앉은 찌꺼기를 말한다.
7. “스컴”이라 함은 정화시설의 침전물중 세균에 의한 번식·소화하여 표면에 떠있는 부유물을 말한다.

제 2 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

제3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①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른 시·군에서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실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①군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이하“정화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정된 청소시기가 도래되기 1월 전에 청소시기 및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방법은 제1호와 같다.

제5조(분뇨 등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은 제외한다.

② 긴급히 분뇨 등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전화등 편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등의 수집·운반대행)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등의 효율적처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3.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등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2. 기타 분뇨 등의 수집·운반의 효율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분뇨수집 · 운반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 사용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 · 운반및정화시설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 · 징수하고, 수수료 징수는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 운반하는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시설등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처리비 징수방법등)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징수한다.

1.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익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에 분뇨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에 처리비에 상당하는 보은군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⑥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장 처리비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관련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한다.

제4장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화장실의 설치)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중화장실의 관리)①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군수는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가축사육제한

제15조(가축사육의 제한)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사육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사육 제한명령)①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

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제6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17조(분뇨관련영업허가)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을 하는 자(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득한 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①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에 응해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서류나 물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부과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제3항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절차 등)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별지 제2호 서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군수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이의제기사항을 통보 후 그 통보사실을 이의제기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행정위탁)인접한 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제9조, 제11조의 사항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분뇨수집 ·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 과 금 액		
			계	수집 · 운반 청 소 비	처 리 비
분 뇨		20리터당	164	144	20
정 화 조	기 본	1,500리터당	15,890	15,300	1,500
	초 과	100리터당	1,000	900	100

[별지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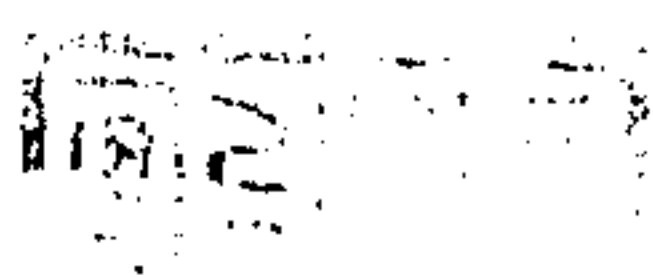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환경 67432 -

시 행 일

수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 서 명	
	주 소	(☎ - -)		
	기 한	년 월 일까지		

보 은 군 수

[별지 제2호]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재극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제 호

수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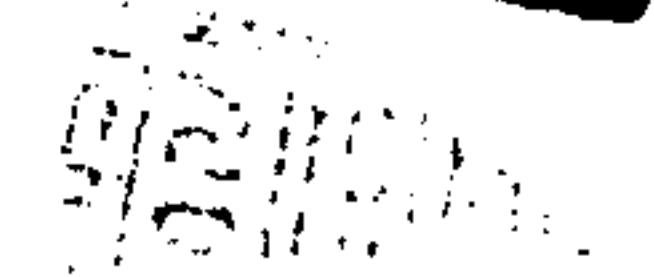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은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4호]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과 태 료 납부통지서번호	제 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 관련 법 규 발 체 》

법명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汚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化粧室·沐浴湯·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收去式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중 脫水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施行日 99·8·9]]
- 2의2. "家畜糞尿"라 함은 家畜이 排泄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을 말한다. [[施行日 99·8·9]]
3. "畜産廢水"라 함은 家畜糞尿와 畜産廢水排出施設을 清掃한 물이 家畜糞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施行日 99·8·9]]
4. "畜産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畜産廢水가 排出되는 施設 및 場所등으로서 畜舍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汚水處理施設"이라 함은 汚水を 沈澱·分解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하며, 單獨淨化槽를 제외한다. [[施行日 99·8·9]]
6. 削除 [99·2·8] [[施行日 99·8·9]]
7. "單獨淨化槽"라 함은 水洗式化粧室에서 나오는 汚水を 沈澱·分解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畜産廢水處理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を 沈澱·分解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 8의2. "堆肥化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を 醱酵하여 堆肥로 만드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施行日 99·8·9]]

8의3. "貯藏液肥化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貯藏하여 液體狀의 肥料로 만드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施行日 99·8·9]]

9.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0.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이라 함은 集團的으로 家畜을 飼育하는 地域의 畜産農家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1. "家畜"이라 함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飼育動物을 말한다. [[施行日 99·8·9]]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市·郡·區는 奧地·僻地등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보다~~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③化粧室이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化粧室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그 化粧室에서 排出되는 糞尿(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하는 汚水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が 糞尿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경우에는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は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集・運搬된 糞尿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의 운영중단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3・7]

第32條 (畜産廢水の 처리 및 費用負擔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 안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を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の 收集・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畜産廢水を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되는 畜産廢水を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 施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는 費用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유지・관리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3・7]

第37條 (許可의 取消 및 課徵金賦課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3·7]

1. 第36條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6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의2.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한 때

2의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糞尿等關聯營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貸與한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3의2. 許可받은 業種외의 營業을 한 때

4.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위반하여 糞尿를 收集·運搬 또는 처리한 때

4의2.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等關聯營業者가 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場合로서 그 營業停止가 당해 事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납부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徵收主體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하되, 環境保全事業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污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施行日 99·8·9]]

2.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施行日 99·8·9]]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8·9]]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施行日 99·8·9]]

2.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의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施行日 99·8·9]]

3. 第9條第2項 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4. 第12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污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사용한 者 [[施行日 99·8·9]]

5. 第13條·第13條의2第1項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污水處理施設 등의 設置 또는 변경을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말한 者 [[施行日 99·8·9]]

6. 第14條第2項 또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污水處理施設·

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者 [[施行日 99·8·9]]

7. 第14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機構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8.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特定工産品을 사용한 者
[[施行日 99·8·9]]

9.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10. 第24條의2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施行日 99·8·9]]

11.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施行日 99·8·9]]

12.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13. 第3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을 飼育한 者
[[施行日 99·8·9]]

14. 第35條第1項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한 者 [[施行日 99·8·9]]

15.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區域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者
[[施行日 99·8·9]]

16. 第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料金を 받은 者 [[施行日 99·8·9]]

17. 第3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18. 第39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19. 第39條의3第2項·第4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調査
또는 檢査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施行日 99·8·9]]

20.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2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 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22.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者 [[施行日 99·8·9]]
23. 第45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8·9]]
24.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施行日 99·8·9]]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7·3·7]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7·3·7]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

법명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99.8.6]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5조 제3항 관련)

부 과 매 상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20	40	7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0	5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0	7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80	12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70	100	150
나. 처리용량 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30	5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40	7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50	80	1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00	15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150	200	300
다.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4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50	80	1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70	10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00	3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4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50	80	1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70	10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2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200	300	400
라.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80	1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00	3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	20	40	70
나.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30인 미만	30	50	8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70	90
라. 처리대상인원 50인 이상	50	80	100
3.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용 거 부하기나 방해한 자	50	70	100
4.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	30	40	50
5. 법 제12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감사표 받지 이 나하고 오수처리시설·산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 용한 자	100	100	100

법명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 (사육동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9]

제30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추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2조의2제1항 내지 제7호의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

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6.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7.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9, 2000·5·23]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5.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③삭제 [99·8·9]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36조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